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안번호 제865호)

예비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7. 3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4. 7. 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4. 7. 14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
-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보고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고성군의회

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만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감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3,502억 3,940만 1천원이고, 세입액은 3,545억 7,497만 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2%가 징수되었으며, 세출액은 1,764억 539만 6천원으로 50.4%가 집행되었습니다.
- 예산현액중 일반회계가 3,428억 1,630만 6천원으로 97.9%를 차지하고, 특별회계가 74억 2,309만 5천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입징수결정액 3,494억 1,941만 5천원의 99.1%인 3,464억 1,598만 8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3억 8,987만 3천원이 늘어난 30억 342만 7천원이었으며, 미수납액중 불납결손액은 1,996만 3천원이고, 체납이월액은 29억 8,346만 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전년대비 21.1% 증가한 14억 4,04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7%가 증가된 15억 4,306만 4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경우 예산현액 3,428억 1,630만 6천원중 지출액은 1,710억 6,676만 7천원으로 집행율이 49.9%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에 그 원인이 있다하겠으나, 예산현액의 약 절반정도 밖에 집행하지 못함은 극히 저조한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 일반회계 예산집행잔액이 131억 6,668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계획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중 부진한 사업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집행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재원의 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필요

하게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의묘를 재대로 살리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 일반회계 예산집행 잔액중 특히, 보조금집행잔액이 30억 2,143만 4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재정자립도(11.5%)를 감안할 때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입징수결정액 83억 142만 2천원의 98.3%인 81억 5,898만 3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4,243만 9천원으로 미수납액중 대부분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1억 3,215만 2천원이었으며,
-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80억 3,708만 6천원의 23.2%인 18억 6,109만원이 과다하게 불용되고 있어 불용원인을 분석하여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결산승인안은 2003회계년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집행책임을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재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합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결산검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5. 질의 및 답변

- 문 : 명시이월사업 처리소홀로 예산현액보다 초과지출한 사유와 초과 지출 금액은?
- 답 : 2003년도 예산집행중 전산처리 등에 따른 업무처리 미흡으로 예산 현액보다 초과지출 되었으며, 2003년도 초과지출금액은 1,063,872 천원입니다.
- 문 : 2003년도 예산현액보다 초과지출한 사항을 최종 확인하는 부서는?
- 답 : 사업관련 부서에서 매년 10월중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대조하여 기획감사실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예산 지출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4. 7. 1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